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440호

「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」 및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/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학교설치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설치중단 및 대책수립 검토 필요
-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학교대상 가스히트펌프 설치 일시유예, 이후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의무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결과 반영

2. 주요 내용

- 비전기식 냉방기 설치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학교를 제외
 -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(안 제4조)
 - *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확히 규정
 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 - * 유치원, 초·중·고와 이에 준하는 학교를 예외 대상에 추가

3. 의견제출
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

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참조 : 에너지효율과장,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보내실 곳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

- 주소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- 전화 : 044-203-5146, 팩스 : 044-203-4759
- 이메일 : 2825lwj@korea.kr

붙임 : 신규 조문 대비표 1부

신구 조문 대비표

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0조(에너지 공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)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,000㎡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%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,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,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,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,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%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1 ~ 6. (생략) <u>< 신 설 ></u> 7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	제10조(에너지 공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)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,000㎡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%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,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,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,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,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%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1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	○ 냉방설비 비전기식 60% 이상 의무 규정 제외 대상 확대 - 국·공립 학교(유치원, 초·중·고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) 추가

현행	개정안	비고
는 경우 ② (생략)	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	
<u><신설></u>	<u>부칙<제2024-00호, 2024.00.00.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	○ 개정 고시 시행일 관련 사항

□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략) 14. < 신 설 >	제3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“ <u>중앙집중 냉방설비</u> ”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방 면적의 60% 이상을 냉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,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.	○ 중앙집중 냉방설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 신설
제4조(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) "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"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% 이상을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냉식,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,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,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,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,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	제4조(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) "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"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% 이상을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냉식,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,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,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,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,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.	

현행	개정안	비고
한다. 다만,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~ 4. (생략)	다만,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	○ 공공기관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관련하여 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도록 규정
<u><신설></u>	<u>부칙<제2024-00호, 2024.00.00.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○ 개정 고시 시행일 관련 사항